



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제정 의의와 기대효과

임준 연구위원, 이성은 연구원

요약

■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음.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,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,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인지보고나 심사의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임.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■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제정 노력이 우여곡절 끝에 2016년 3월 2일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음.

-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해 대상 범위가 일반 사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형법을 통해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에 한계가 있었음.
 - 이번에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험사기 방지가 가능해졌음.

■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형량의 강화로,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음.

- 기존 형법(제347조)의 경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- 한편, 고액의 보험사기범이나 계속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음.
 -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음.

-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,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음.

■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두 번째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으로,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음.

-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 시 건별로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소비자보호 조항에 해당됨.

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규제당국의 공문이나 협조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인지보고나 심사의뢰 등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임.

- 우선,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또한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였음.
- 그리고,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■ 이번 특별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잠재적 보험사기범에게 우리 사회가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전에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.

- 또한,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[kiri](#)